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15] <신설 2024. 6. 28.>

2024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704		양배추·꽃양배추·콜라비(kohlrabi)·케일(kale)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704	90	기타	양배추(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)	0	2,500톤
0706		당근·순무·샐러드용 비트(beet root)·선모(仙茅)·셀러리액(celeriac)·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706	90	기타 1. 무		0	수입전량